

교육협력 교류 협약서(안)

서울특별시 성동구 ○○동 주민센터와 서울○○초등학교는 교육 특구 활성화와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○○동 주민센터와 서울○○초등학교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역할을 증진하고 상호 발전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

1.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인적·물적자원의 상호교류 및 협력
2. 어린이·청소년 교육지원 위한 상호 협력
3.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
4. 양 기관의 협력사업 및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
5. 기타 양 기관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

제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협약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의한 후 변경 할 수 있다.

제4조(효력발생)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. 2. .

서울특별시 성동구 ○○동장

○ ○ ○

서울○○초등학교장

○ ○ ○
